

교육적 통계의 국제 표준화에 관한 개정 권고  
Revised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Educational Statistics

1978년 11월 27일  
제20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

## 교육적 통계의 국제 표준화에 관한 개정 권고

### Revised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Educational Statistics

1978년 10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파리에서 개최된 제 20차 유네스코총회에서 유네스코 헌장 제 8조 "각 회원국은 유엔 총회의 결의에 의거하여 교육, 과학 및 문화생활과 제도에 관련되어 있는 자국의 법률 및 제 통계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유네스코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상기하고*,

각 자료의 국제적 비교가치를 높이고, 각국의 관계자가 교육에 관한 통계의 작성 보고에 있어 표준으로 삼을 어떠한 표준적 정의, 분류방법 및 도표작성의 표준화가 시급하다는 것을 *확신하여*,

이 목적으로 교육통계의 국제 표준화에 관한 권고를 제 10차 총회에서 *채택한 바*, 제 35차 세계교육회의(제네바, 1975년 8월 27일-9월 4일)에서 채택된 교육국제표준분류(ISCED)가 국제적 수준에서의 국가교육체제의 조화, 그래서 교육통계에 있어 비교성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만들었다는 것을 *유념하고*,

제 19차 총회에서 1958년 권고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을 *결정한 바*,

1978년 11월 27일 본 개정 권고를 *채택한다*.

총회는 각 회원국이 본 권고에 규정되어 있는 원칙과 규범이 자국의 관할지역 내에서 효력이 발생되도록 입법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교육에 관련된 국제적 보고에 있어 통계에 관한 정의, 분류, 표 작성에 대하여 다음의 규정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총회는 또한 각 회원국은 본 권고를 각 국의 교육통계작성 관계자 및 기관에 널리 주지시켜 줄 것을 권고한다.

## I. 문맹자에 관한 통계

### 정의

1. 통계의 목적상 다음의 정의가 쓰여져야 한다:

(가) *문자해독자*는 일상생활상의 간단한 문장을 읽고 쓰고 이해할 수 있는 자이다.

(나) *문맹자*는 일상생활상의 짧고 간단한 문장을 읽거나 쓰지 못하며 이해하지 못하는 자이다.

(다) *기능적 문해자*는 그가 속한 단체나 지역사회에서 효율적인 기능을 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독상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이며, 그 자신과 속한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읽기, 쓰기, 계산을 할 수 있는 자이다.

(라) *기능적 비문해자*는 그가 속한 단체나 지역사회에서 효율적인 기능을 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독상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는 자이며, 그 자신과 속한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읽기, 쓰기, 계산을 할 수 없는 자이다.

### 추정 방법

2. 문자해독자와 문맹자의 수를 결정하는데는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이 쓰여질 수가 있다:

(가) 주민에 대한 완전인구조사방법 또는 표본조사방법에 의하여 전기한 정의에

비추어 적절한 질문을 하거나 질문지를 통한 방법.

(나) 특별조사용 표준문자 해독자 테스트 방법을 활용한다. 이 방법은 다른 방법으로 얻는 자료를 확인하는데, 또는 다른 각 자료상에 나타나 있는 편차를 수정하는데 쓰일 수 있다.

(다) 상기 어느 방법도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음 자료에 근거한 추정치를 마련한다:

- (1) 학교 재학자 범위에 관한 특별조사통계자료 및 표본조사자료
- (2) 인구조사통계자료 및 정규학교통계자료
- (3) 국민의 교육적 배경에 관한 자료

#### 분류방법

3. 10세 및 10세 이상의 연령층 인구는 우선 문자해독자와 문맹자의 2대 집단으로 분류한다.

4. 이들 2대 집단은 성별 및 연령별로 다음과 같은 집단으로 분류한다.

10~14, 15~19, 20~24, 25~34, 35~44, 45~54, 55~64, 65세 및 그 이상의 연령집단

5. 합당한 곳에서는 다음에 대하여 추가적인 분류를 해야 한다:

(가) 도시인구와 농촌인구;

(나) 한 국가 내에서 통계상 목적으로 구분하는 것과 같은 인종별 집단에 대한 분류와 같은 분류;

(다) 사회적 집단.

## II. 국민의 교육적 배경에 관한 통계조사

### 정의

6. 다음 정의가 통계상 목적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 한 인간의 교육적 배경은 최고단계 혹은 자국의 교육제도 혹은 다른 어떤 나라의 교육제도에서 그가 이수한 교육수준이다.

### 추정방법

7. 국민의 교육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다음 방법이 쓰여질 수 있다:

(가) 상기 정의에 합당한 질문을 완전인구조사에서 혹은 주민의 표본조사에서 할 수 있다.

(나) 이 방법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다음 사항에 입각한 추정치를 마련한다.

(1) 앞서 실시한 인구조사자료 또는 표본조사자료

(2) 수년에 걸친 학교재학생기록, 시험기록, 학교졸업증서기록, 수여된 학위에 대한 기록자료

### 분류방법

8. 15세 및 그 이상 국민을 우선 교육수준에 의하여 분류한다. 교육수준의 표시는 완전히 이수한 최고학년이라는 말로 표시하는 것보다는 끝마친 교육의 수준이란 말로서 표시하는 것이 좋다. 가능하면 언제든지 각 수준에 있어서의 틀리는 교육유형간의 구별을 해야 한다.

9. 이들 각 집단은 성별 및 또 연령별로도 다음과 같은 집단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즉, 15~19, 20~24, 25~34, 35~44, 45~54, 55~64, 65세와 그 이상

10. 적절한 곳에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추가분류가 작성되어야 한다:

- (가) 도시인구와 농촌인구;
- (나) 흔히 한 국내에서 통계목적에 위하여 구분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인종적 집단;
- (다) 사회적 집단.

### III. 교육기관에 관한 통계조사

#### 정의

11. 교육자료가 수집되기 위한 기본통계단위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프로그램은 보통 교과과정 계획표로부터 택해진 한 두 개의 코스나 그 합한 것의 선택이다. 이런 프로그램은 특정분야의 몇 개의 코스로 되어있거나, 다른 분야의 코스가 합해질 경우도 있다. 각 프로그램은 고급과정으로서의 자격으로서 목적을 명시하기도하고, 한 두 개의 직업에 대한 자격, 혹은 순전히 지식이나 이해의 증진을 위할 수도 있다.

12. 교육국제표준분류법(ISCED)에서 정한 정의 외에 다음 정의가 통계목적에 위하여 쓰여져야 한다:

- (가) 학생은 교육의 어떤 수준에 체계적 학습을 받기 위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이다.
- (나) 교원은 시간제라도 지식이나 기술 등을 전수하기 위해 고용된 어느 누구나를 말한다:
  - (1) 전임교원은 각 국가에서 통상적으로 전임교원으로 간주되는 시간동안 교수에 종사하고 있는 자
  - (2) 시간제 교원은 전임교원이 아닌 교원
- (다) 학년은 통상적으로 1개 학교 학년의 전과정을 이수하는 단계다.
- (라) 학급은 1학기간 통상적으로 어떤 한 사람의 교원 또는 여러 교원에 의하여 함께 교수를 받는 일단의 학생집단이다.
- (마) 학교(교육기관)는 일정한 사람의 교원 또는 교장과 여러 교원 밑에서 일정한 유형 또는 수준의 교육을 받기 위해 한 개 또는 몇 개 학년으로 구성되어 있는 학생집단이다.
  - (1) 공립학교: 재원에 관계없이 공공기관(국가, 연방, 주, 혹은 도, 시, 군 등 지방단체)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학교
  - (2) 사립학교: 정부기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지 않은 학교이다. 정부기관으로부터 재정보조를 받든 받지 않든 관계없다. 사립학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를 받는 정도에 따라서 유보조 학교 혹은 무보조 학교로 정의될 수 있다.
- (바) 의무교육 적령인구는 의무교육제한 연령사이에 있는 전체인구이다.

#### 분류방법

13. 교육은 가능한 한 다음과 같은 수준별로 분류해야 한다:

- (가) 정규교육
- (나) 성인교육

14. 정규교육과 성인교육은 정규특수교육과 성인특수교육을 구분하기 위해 더

세분화되어야 한다.

15. 교육은 가능한 교육국제표준분류법(ISCED)의 등급-카테고리와 연구분야에 의해 분류되어야 한다.

16. 가능한 한, 성인교육은 ISCED 프로그램으로 세분류되어야 한다.

#### 통계표작성

#### 17. 정규교육

ISCED 등급-카테고리 0, 1, 2, 3, 5, 6, 7 과 ISCED 연구분야의 통계표 작성은 다음과 같이 만든다:

(가) 공립 및 사립학교 수와 학급 수

(나) 성별 및 자격별 교원의 수(각 국의 현행제도에 따를 것), 가능한 지역에서는 전임과 시간강사별로 분류된 교원의 수

(다) 성별 학생 수, 적절한 지역에서는 정식학생 혹은 시간제 학생과 같이 분류된 학생 수

(라) 해당연도에 중등단계의 교육을 완전이수하고 졸업증을 얻은 남녀별 학생 수

(마) 성별 및 출신국별 외국학생 수 (ISCED 등급5, 6, 7)

#### 18. 성인교육

ISCED 등급-카테고리, 연구분야, 프로그램에 의한 통계표 작성은 다음과 같이 만든다:

(가) 프로그램의 방법과 기간, 형식적 혹은 비형식적

(나) 참가자 수, 성별과 연령 별.

(다) 성별 교원의 수

#### 19. 특수교육

ISCED 등급-카테고리 0, 1, 2, 3, 5, 9, 정규/성인, 에 의한 통계표 작성과 ISCED 연구분야가 필요한 다음 항목에 해당한다:

(가) 학교 수 (교육기관)

(나) 성별과 자격별 교원 수 (각 국에서 현행제도에 따라)

(다) 가능한 성별, 연령별 학생 수, 장애 종류

#### 20. 인구데이터

가능한 최신 인구조사자료와 최근의 추정치에 따라서 2~24세의 인구는 단일 연령별, 남녀별에 의하여 통계표가 작성되어야 한다. 만약에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적어도 2~4, 5~9, 10~14, 15~19, 그리고 20~24세의 연령군에 대한 인구조사자료와 최근의 추정치가 보고되어야 하며, 그리고 의무교육 적정인구에 대한 별개의 보고가 있어야 한다.

## IV. 교육 재정에 관한 통계

### 정의

21. 통계목적에 위해서는 다음의 정의가 쓰여져야 한다:

(가) 수입은 학교에 의하여 수납되는 현금 또는 학교를 위해 쓰여지기로 계정 되어있는 현금을 말한다. 이에는, 특별계정, 보조금, 학비수입, 증여와 같은 재 산의 현금화 가능금액이 포함된다.

(나) 지출은 학교를 위해 또는 학교에 의하여 물품구입과 용역을 위해 발생한 재정적부담을 말한다.

(다) 경상지출은 자본지출과 원리금상환 지출을 제외한 모든 지출을 말한다.

(라) 자본지출은 토지, 건물, 시설 등을 위한 지출을 말한다.

(마) 원리금상환 지출은 이자지불과 주요 차관의 상환을 말한다.

#### 분류방법

22. 일정한 회계연도 사이의 교육재정에 관한 통계자료는 가능한 한 다음과 같이 분류되어야 한다:

(가) 수입

(1) 공공당국으로부터의 수입(중앙정부, 지방정부, 도, 주와 같은 정부, 시, 도, 군과 같은 지방당국과 같은 공공단체);

(2) 기타 재원으로부터의 수입(학교공납금, 학부형 증여금 등의 기타수입)

(나) 지출

(1) 경상지출(이자지불은 제외), 즉 학교의 관리운영비, 교수비 등 가능한 지역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교원에 대한 급료 및 교수진을 직접 보조하는 인원에 대한 급료, 기타 교육잡비 및 모든 경상비;

(2) 자본비 지출(원리금상환금은 포함되지 않음), 교육용, 비교육용(주택, 학교건물, 식당, 서점 등)

(3) 원리금상환.

#### 통계표 작성

23.. 재원별 수입과 목적별 지출에 관한 통계표가 작성되어야 한다. 가능한대로 이 권고의 제13~15와 22와 일치하도록 세분류한다. 그리고 각 국의 행정, 재정제도에 일치시키도록 한다. 가능하다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별 지출을 구분하고, 교수비와 기타 비용을 구분하고, 각급 학교별 지출을 구분한다.

전기 사항은 파리에서 개최된 제 20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었고, 1978년 11월 28일에 선언된 권고의 정본이다.